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86

발의연월일: 2020. 12. 8.

발 의 자:정태호·강병원·강훈식

김성주 · 김진표 · 박상혁

유준병 • 이광재 • 장철민

정일영 · 조승래 · 한병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책임투자가 활성화 되고 있고, 특히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환경책임투자는 기후변화·환경오염 등의 전 지구적 위기를 대응하는 핵심 수단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의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등에서 환경책임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초기 단계 수준에 머물고 있고, 특히, 기업에 대한 환경정보 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원활하지 않은 점이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에 대한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금융기관 등은 환경책임투자를 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현재 기업 등의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환경정보공개제도의 대상에 환경책임투자가 필요한 기업까지 포함토록 하여 환경책임투자 를 활성화하고 기업 등의 녹색경영을 촉진시키고자 함(안 제10조의4 신설, 제16조의8).

법률 제 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3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환경책임투자 활성화) 금융기관은 환경적 요소를 투자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투자(이하 "환경책임투자"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을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하는 기업 등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 1.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중 환경책임투자를 위해 환경정보 공개가 필요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행 개 아 제10조의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 제10조의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 시스템의 구축·운영) ①·② 시스템의 구축・운영) ①・② (생략)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 및 환경부장 -----금융기관(이하 "금융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유 기관"이라 한다)-----관기관이 녹색경영 기업에 대 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워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4(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신 설> 금융기관은 환경적 요소를 투 자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투자 (이하 "환경책임투자"라 한다) 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공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공 개) ①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 개) ①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 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나에 해당하는 기업-----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근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신 설>

- 1. ~ 4.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하는 기업 등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 1.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 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중 환경책임투자를 위해 환경정보 공개가 필요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큰 기업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② (생략)